



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변경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<p>▲ 간이과세자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(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)</p> <p>▲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이상~1억 4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(부가가치세법 제32조,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)</p> <p>1.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지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</p> <p>2.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,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.</p>		

붙임 :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.

기 관 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)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		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 ² (재활용품)]					